

유엔아동권리협약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제20호 (가정환경을 박탈당한 아동의 보호) 중 일부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가정 환경을 박탈당했거나 가정환경에 남아있는 것이 아동 최상의 이익에 반하는 경우, 아동은 국가로부터 특별한 보호와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다. A child temporarily or permanently deprived of his or her family environment, or in whose own best interests cannot be allowed to remain in that environment, shall be entitled to special protection and assistance provided by the State.

유엔홈팅 골의안 아동의 대안양육에 관한 지점 (Resolution adopted by the General Assembly, 64/142. Guidelines for the Alternative Care of Children) 중일부 (para. 14.)

가정에서 아동을 분리시키는 것은 가장 최후의 수단이어야 하며, 가능한 한 일시적이고 최단기간 동안에만 이루어져야 한다. 분리에 대한 결정은 정기적으로 심사되어야 한다. 또한 49 항에 의거해 본래 아동을 분리시켜야 했던 원인이 해결되거나 사라진 경우에는 아동 최상의 이익에 부합하도록 아동을 가정환경 보호로 돌려보내야 한다.

Removal of a child from the care of the family should be seen as a measure of last resort and should, whenever possible, be temporary and for the shortest possible duration. Removal decisions should be regularly reviewed and the child's return to parental care, once the original causes of removal have been resolved or have disappeared, should be in the best interests of the child, in keeping with the assessment foreseen in paragraph 49 below.

자유가박탈된아동에 대한 유엔 국제연구를 꾸도한 독립전문가의 보고대 (Report of the Independent Expert leading the United Nations global study on children deprived of liberty, A/74/136) 공 일부

I. 자유박탈은 아동기의 박탈이다. 만약 어떠한 이유로든 아동이 가정에서 성장할 수 없다면, 국가는 아동이 가족과 같은 환경에서 적절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아동을 자유가 박탈되거나 박탈될 수 있는 기관 또는 여타 시설에 배치하는 것은 아동권리협약의 주요 원칙(guiding principle)과 조화되기 어렵다.

[번역: 국제아동인권센터]

I. Deprivation of liberty is deprivation of childhood If children, for whatever reason, cannot grow up in a family, States shall ensure that they are cared for in a family-type environment. Placing children in institutions and other facilities where they are, or may be, deprived of liberty is difficult to reconcile with the guiding principles of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